

#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(이민석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998
----------	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3년 08월 11일

발 의 자: 이민석 의원(1명)

찬 성 자: 김경훈, 김길영, 김영철,  
김용일, 김원중, 김재진,  
김지향, 김춘곤, 김태수,  
김형재, 김혜영, 남궁역,  
남창진, 민병주, 박 석,  
박영한, 박춘선, 박환희,  
서상열, 소영철, 송경택,  
신동원, 신복자, 옥재은,  
유만희, 유정인, 윤기섭,  
윤영희, 윤종복, 이봉준,  
이상욱, 이종태, 이종환,  
이효원, 임춘대, 최민규,  
최진혁, 허 훈, 홍국표  
의원(39명)

### 1. 제안이유

- 지방공무원의 연가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근무시간 외에 근무를 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를 하는 경우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.
- 일·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난임치료시술 휴가를 확대한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함.

### 2. 주요내용

- 가.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할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(안 제15조).
- 나. 난임치료시술 휴가를 1일에서 최대 4일로 확대함(안 제24조).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

##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④ 제1항에 따라 근무를 한 공무원은 「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 제15조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 범위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할 수 있다.

제20조의4제1항 중 “연가일수 중”을 “연가일수 및 제15조제4항에 따라 전환된 연가일수 중”으로 한다.

제24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⑦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난임치료시술휴가를 받을 수 있다.

1. 여성공무원: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목에서 정한 기간

가. 인공수정 등 시술을 받는 경우: 총 2일(시술 당일 1일과 시술일 전날, 시술일 후 2일 이내이거나 시술 관련 진료일 중에 1일)

나. 동결 보존된 배아를 이식하는 체외수정 시술을 받는 경우: 총 3일(시술 당일 1일과 시술일 전날, 시술일 후 2일 이내이거나 시술 관련 진료일 중에 2일)

다. 난자 채취를 하여 체외수정 시술을 받는 경우: 총 4일(난자 채취일에 1일, 시술 당일에 1일과 시술일 전날, 난자 채취일 전날, 시술일 후 2일 이내, 난자 채취일 후 2일 이내이거나 시술 관련 진료일 중에 2일)

2. 남성공무원: 정자 채취일에 1일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5조(시간외근무와 공휴일 등 근무) ① ~ ③ (생략)</p>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 <p>제20조의4(연가의 저축) ① 공무원은 연가보상비 지급대상인 연가일수 중 사용하지 않고 남은 연가일수를 그 해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이월·저축하여 사용할 수 있다.</p> <p>②·③ (생략)</p> <p>제24조(특별휴가) ① ~ ⑥ (생략)</p> <p>⑦ <u>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시술 당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. 다만,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난자 채취일에 1일의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.</u></p>	<p>제15조(시간외근무와 공휴일 등 근무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<u>제1항에 따라 근무를 한 공무원은 「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 제15조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 범위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할 수 있다.</u></p> <p>제20조의4(연가의 저축) ① ----- 연가일수 및 제15조제4항에 따라 전환된 연가일수 중 -----.</p> <p>②·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24조(특별휴가) ① ~ ⑥ (현행과 같음)</p> <p>⑦ <u>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난임치료시술휴가를 받을 수 있다.</u></p> <p>1. 여성공무원: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</p>

당 목에서 정한 기간

가. 인공수정 등 시술을 받는

경우: 총 2일(시술 당일에 1일과 시술일 전날, 시술일 후 2일 이내이거나 시술 관련 진료일 중에 1일)

나. 동결 보존된 배아를 이식

하는 체외수정 시술을 받는 경우: 총 3일(시술 당일에 1일과 시술일 전날, 시술일 후 2일 이내이거나 시술 관련 진료일 중에 2일)

다. 난자 채취를 하여 체외수

정 시술을 받는 경우: 총 4일(난자 채취일에 1일, 시술 당일에 1일과 시술일 전날, 난자 채취일 전날, 시술일 후 2일 이내, 난자 채취일 후 2일 이내이거나 시술 관련 진료일 중에 2일)

2. 남성공무원: 정자 채취일에 1일

⑧ ~ ⑱ (현행과 같음)

⑧ ~ ⑱ (생략)